

2024년도 문화재위원회

**제1차 공개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**

- 일 시 : 2024. 1. 23.(화) 14:00~
- 장 소 :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(대회의실)

**문 화 재 위 원 회**

## □ 고지사항

1.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0조에 따라,
  -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,
  -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,
  -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(법인의 상근·비상근 임직원 포함)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,
  -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,
  -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
  -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.
  -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.
2.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3. 아울러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4.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 안건 목록

### 【심의사항】

-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국가등록문화재 「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」 현상변경(2차, 재심의) |  |
| 2 | 사적 「환구단」 현상변경(2차)                     |  |
| 3 | 국가등록문화재 「원주 구 반곡역사」 현상변경              |  |
| 4 | 「디젤난방차 905호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             |  |

### 【보고사항】

- |   |  |  |
|---|--|--|
| 5 | 사적 「대한성공회 강화성당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통합안) 보고 |  |
|---|--|--|

## 1. 국가등록문화재 「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」 현상변경(2차, 재심의)

### 가. 제안사항

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「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」 등록구역 일부 철거 및 외관을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「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」 등록구역 일부 철거 및 외관을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유산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  - '23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('23. 6. 27.) : **부결**
    -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, 구조 및 특성 훼손이 우려됨
  - '23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('23. 10. 24.) : **보류**
    -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조정 후 재심의
  - '23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('23. 11. 9.) : **조건부 가결**
    - 구조 보강 방법의 당위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
    - 증축 입면(3층) 마감 통일성 유지
    - 학예연구실 증축부 재고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국립현대미술관
- (2) 대상문화재명 : 국가등록문화재 「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」('02.5.31. 등록)
  -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(선화동)
- (3) 세부내용
  - 대상위치 : 해당 문화유산
  - 신청내용 : 일부 철거 및 외관 변경
    - 일부 철거
      - 1960년 이후 증축된 건축물 철거
      - 1932년 건립 구역 건축물 일부 철거
    - 외관 변경
      - 외벽면에 접하여 건축물 수평증축
      - 3층부 전체 철거 후 건축물 수직증축(디자인 동일, 지붕재료 변경)

- 좌·우측 연결통로 철거 후 실내연못 및 성큰(sunken) 조성
- 형태 변형된 창호 교체 등 입면 복원
- 기타
  - 내진보강: 전단벽 설치, 마이크로 파일 설치 등
  - 지하층 설치를 위한 흙막이 공사

## 2. 사적 「환구단」 현상변경(2차)

### 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「환구단」 지정구역 내에서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를 증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「환구단」 지정구역 내에서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를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유산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- '23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('23. 10. 24.) : **부결**
  - 문화재 지정구역 내로 문화재 보호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적 「환구단」('67.7.15. 지정)
 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-14
- (3) 세부내용
  - 신청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-14
    - ※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
  - 세부내용 : 기존계단실에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 증설
    - 계단실 면적: 35.69㎡ (변경없음)
    - 증축부 규모: 지상 4.3m, 지하 18.75m (5개 층)
    - 지상 노출부 마감 : 기존 강화접합유리 (변경없음)

### 3. 국가등록문화재 「원주 구 반곡역사」 현상변경

#### 가. 제안사항

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「원주 구 반곡역사」에서 영화 촬영장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「원주 구 반곡역사」에서 영화 촬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국가등록문화재 「원주 구 반곡역사」('05.4.15. 등록)
  - 소재지 :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54-2번지
- (3) 세부내용
  - 대상위치 :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54-2번지
    - ※ 당해 문화재
  - 신청내용 : 영화 촬영에 따른 외관 변경
    - 창호공사: 기존 반곡역사 창틀 및 창호 교체
    - 도장공사: 승강장 출입문 및 외벽 도색
    - 기타공사: 가벽설치, 간판 교체 등
  - ※ 영화 촬영 종료 후 복구 예정

## 4. 「디젤난방차 905호」 국가등록문화재 등록

### 가. 제안사항

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 소장 「디젤난방차 905호」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('23.11.28.)를 거쳐 등록 예고한 「디젤난방차 905호」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장
- (2) 대상문화재
  - 문화재 명칭 : 디젤난방차 905호
  - 소유자 : 한국철도공사
  - 소재지 : 철도박물관(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)
  - 수량 : 1량
  - 제작연대 : 1964년
  - 규격 : 길이 13,000mm / 높이 3,737mm / 폭 3,000mm
- (3) 심의사항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
- (4) 추진경과
  - ('23.3.31.) : 문화재 등록신청(경기도→문화재청)
  - ('23.8.31./9.12.) :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
  - ('23.11.28.) :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등록 검토 '원안가결'
- (5) 등록예고 : '23. 12. 14. ~ '24. 1. 11.(30일간) \* 의견 없음

## 5. 사적 「대한성공회 강화성당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9개소 통합안) 조정 보고

### 가. 보고사항

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「대한성공회 강화성당」 및 「강화산성」, 「강화 고려궁지」 등 9개소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한 조정(통합안) 결과를 보고합니다.

### 나. 보고사유

- 허용기준의 공통사항 재검토를 중심으로 추진한 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’ 연구용역(보존정책과 주관) 결과에 따라,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, 강화산성 및 강화 고려궁지와 시도지정 문화재 용흥궁 등 9개소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### 다. 보고내용

- (1) 신청인 : 인천광역시 강화군수
- (2) 대상문화재명 : 대한성공회 강화성당(사적 / '01.01.04. 지정), 강화산성(사적 / '64.06.10. 지정), 강화 고려궁지(사적 / '64.06.10. 지정), 용흥궁(시유형문화재 / '95.03.02. 지정), 강화유수부 동헌(시유형문화재 / '95.03.02. 지정), 강화유수부 이방청(시유형문화재 / '95.03.02. 지정), 강화 석수문(시유형문화재 / '95.03.02. 지정), 강화향교(시유형문화재 / '95.11.15. 지정), 김상용순절비(시기념물 / '95.11.15. 지정)
- 소재지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
- (3) 세부내용 : 허용기준 조정 결과 (문화재청 고시 제2023-164호/2023.12.29.)
  -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통합 고시 (9개소)
  - (용어 변경) ‘개별심의→개별검토’, ‘건축물 최고높이→최고높이’, 공통사항 ‘건축물→건축물 및 시설물’, ‘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→자원순환 관련 시설’
  - (공통사항 조정 신설) 태양에너지 설비 조항,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, 도로 교량 등의 신설 및 확장
  - (도면 범례 표기 변경) 2, 3, 4, .. 구역 → 2-1, 2-2, 2-3, ....

(4) 추진경과

- 주민공람('23.10.18.~'23.11.06.) : 의견 있음(12건 : ○○○ 등 23명)
  -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(비닐하우스)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
- 사적분과위원회 심의('23.12.13.) : '조건부가결'
  -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
- 허용기준 조정 고시('23.12.29.) :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 설치 제외 반영

붙임 허용기준 비교표 및 도면

<붙임> 허용기준 비교표 및 도면

○ 허용기준 비교표

변경 전 (2015.05.18. 기고시)			변경 후 (2023.12.29. 통합고시)		
대상 문화재	강화산성, 강화 고려궁지, 대한성공회 강화성당		대상 문화재	강화산성, 강화 고려궁지, 대한성공회 강화성당, (시유형문화재)용흥궁·강화유수부 동헌·강화유수부 이방청·강화석수문·강화향교, (시기념물)김상용 순절비	
	평지붕	경사지붕		평지붕	경사지붕
1구역	○ 개별 심의 구역		1구역	○ 개별검토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	2-1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	2-2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	2-3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5m 이하
5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	2-4구역	○ 최고높이 14m 이하	○ 최고높이 18m 이하
6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	2-5구역	○ 최고높이 17m 이하	○ 최고높이 21m 이하
7구역	○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3구역	○ 좌동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아 추정지역에서 터파기 시 유구 조사를 선행하여야 함.</li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·개축을 허용함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관련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시설은 개별 심의함.</li> <li>○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·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.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/li> <li>○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(문화재 위원회의 심의)를 거치도록 함.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삭제(법령중복)</li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·개축을 허용함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·석축·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/li> <li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</li> <li>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/li> <li>○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</li> </ul>		
	<신설>				
	<신설>				
	<신설>				

○ 허용기준 도면 비교표(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)

